

청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가단886 판결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대여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12,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C는 2018. 7. 20. 원고에게 “C가 원고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2018.

12. 27.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60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1) C의 부친인 F은 2016. 1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G, H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I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12. 9. 접수 제149534호로 2016. 1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있었다.

2)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58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11. 1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16. 12. 9. 접수 제149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E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2018.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2016. 12. 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란을 피고의

단독소유에서 피고(3/4지분)와 C(1/4지분)의 공유로 경정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및 배당

1) 원고는 2019. 6. 5. 청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은 2020. 1. 30.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2020. 2.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20. 3. 1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K조합(이하 'K조합'이라고 한다)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금액 55,090,178원(피고의 대출원금 55,000,000원, 이자 90,178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원고는 4순위 신청채권자로서 2,287,330원만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E의 구상금 청구 소송

E은 2020. 4. 23. 피고를 상대로, “C는 K조합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인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C는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을 상실한 반면 K조합은 55,090,178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위 배당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물상보증인인 C는 피고에 대하여 위 배당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E은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배당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2471)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26. “피고는 E에 55,090,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6943),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참조).

나. E이 2020. 4. 23.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지분 매각금이 K조합의 C에 대한 채권에 배당됨으로써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 55,090,178원 중 원고의 채권 범위 내인 37,712,67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¹⁾,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C가 이 사건 지분 매각금으로 피고의 K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으로서 선행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후인 2021. 2.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김수영

1)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C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C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